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2019-19호)

본 안건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

2019. 7. 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목 차

| | |
|--|----|
| 요 약 | 1 |
| I. 추진 배경 | 4 |
| II. 현황 및 문제점 | 5 |
| III.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7 |
| 1. 논의 필요 사안 | |
| (1)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 7 |
| (2) 책임투자 전략 | 8 |
| (3) 위탁펀드 규모 확대 | 11 |
| (4) 벤치마크 변경 및 공개 | 12 |
| 2. 주요 추진사항 | |
| (1)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 13 |
| (2) 책임투자 담당 조직 역량 강화 | 15 |
| (3) 기업 ESG 정보 공시 확대 | 16 |
| (4)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내실화 | 17 |
| (5) 기금운용본부 ESG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18 |
| IV. 향후 추진계획 | 20 |
| <붙임> | |
| 1. 책임투자 개요 및 유형 | 21 |
| 2.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 22 |
| 3. 해외연기금 투자제한 관련 지침사례 | 24 |

요 약

□ 현황

-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규모 증가 추세, 해외 주요 연기금은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
 - * (全世界) ('14) 약 18.3조\$ → ('16) 약 22.9조\$ ('14대비 약 25% 증)
(지역별) (유럽)약 12조\$(52.6%), (미국)약 8.7조\$(38.0%), (일본) 약 0.5조\$(2.2%) 등
- 주식위탁의 유형으로 책임투자 펀드* 운용, 주식 직접 운용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 중
 - * (책임투자 위탁펀드) 술, 담배, 도박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네거티브 스크리닝),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포지티브 스크리닝)을 중심으로 BM을 구성
 - ** (직접 운용) 운용역이 ①신규종목 편입시 기업 ESG가 하위등급일 경우 ESG보고서 첨부, ② 투자종목 점검시 기업 ESG가 하위등급임에도 BM비중보다 높게 투자한 경우 검토의견 작성 등
- 기금 운용전반에 책임투자를 적용할 수 있는 전략 및 지침 등 마련 하고, 신뢰성 높은 ESG정보 확보 등을 위한 책임투자 기반 조성 필요

□ 주요 논의사항

①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 국내주식 직접·위탁에 일부 한정하여 고려중인 책임투자 자산군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 문제
- (1안) 기금본부 조직·인력, 국내·외 여건 등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국내주식(직접+위탁),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 順으로 확대 (대체투자는 제외)
- (2안)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시 확대

② 책임투자 전략

- 주식 직접운용은 ①ESG통합 전략,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②스크리닝 전략 (포지티브, 네거티브),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으로 ③주주활동 기법 적용 중이나,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원칙·기준 설정 등을 검토 필요
- (원칙) 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
 - ①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또는 행위가 ESG 측면에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②주주활동 등을 통해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자제한 실시
- (방식)투자 제한시 해당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배제하는 ①투자배제 방식, 또는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②비중제한 방식 도입을 검토 가능
- (범위) 자산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제한 자산군(①국내·외 주식 적용 또는 ②국내·외 주식 및 채권 적용) 검토 가능
- (기준) 투자제한 대상기업 선정과 해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기준 및 단계적 이행방안 별도 마련
- (절차) 투자제한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 선정, 수탁자책임 전문위 검토 및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거쳐 기금운용본부가 실시

③ 위탁펀드의 규모 확대

- 책임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위탁펀드 규모 확대 검토 필요
- (1안) 장기 목표 설정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정하지 않음
- (2안) 장기목표 설정을 통한 책임투자 규모 확대 및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

④ 책임투자 위탁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및 공개

- 수익률 제고 및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책임투자 위탁펀드 BM 변경 및 BM 공개여부 검토

□ 주요 추진사항

-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책임투자 기본원칙·목적,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 및 전략 책임투자 이행체계, 책임투자 관련 정보공시 내용 등 포함
- (책임투자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해외기업·투자자간의 책임투자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운용역-책임투자팀간의 협업체계 구축 등
- (기업 ESG 정보 공시 여건 개선) 기업의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 추진, 투자기관의 기업분석·운용보고서 ESG 요인을 포함하도록 유도
-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국내·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책임투자 고려하도록 관련 기준 마련,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강화
- (기금운용본부 ESG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ESG 관련 평가지표 지속 개선 추진, ESG 이슈 발생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기업과의 대화 추진

□ (향후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 마련(19.9월)

I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주요 연기금은 각각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
 - * (全世界) ^('14) 약 18.3조\$ → ^('16) 약 22.9조\$ ('14대비 약 25% 증)
(지역별) ^유럽 약 12조\$(52.6%), ^미국 약 8.7조\$(38.0%), ^일본 약 0.5조\$(2.2%) 등
- 한편, 국민연금은 수익 제고차원에서 '06년부터 주식 위탁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 펀드를 운용, 이를 시초로 점진적으로 책임투자 확대
 - 지난 10여년간 책임투자 관련 국제원칙인 ^UN PRI* 가입('09), ^책임투자 근거규정 마련('15), ^기업 ESG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15) 등 지속 추진
 - * (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 이행을 위한 6개 원칙
 - ① 책임투자 방침, 이행체계 개발, ② 적극적 Engagement, ③ 정보공개, ④ 위탁기관에 책임투자 시행 요구, ⑤ 관련기관 지원 및 협업, ⑥ PRI 실행결과 보고
-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 그간 국내주식 일부분에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공개적인 책임투자 관련 활동 등에 소극적
 - * '18년말 26.8조원, 국내주식 중 24.6%(주식 위탁 중 8.5%), 기금 전체 중 4.2%
 - 초대형 기금, 장기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 수익 제고 차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성 대두
 - * 투자기업의 재무적 평가로 노출되지 않은 ESG 차원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거나 투자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기업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 이에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 공적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시장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도모 추진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책임투자 개요

- 투자자산의 선택·운용시 수익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하는 투자 방식

□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 (법·제도) 각종 규정에 책임투자 근거 旣 마련
 - * ▲ 국민연금법에 책임투자 원칙 규정('15.1월), ▲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현황 공시 내용('15.8월) 및 책임투자 원칙 반영('16.4월) 등
- (인프라 구축) 책임투자 직접 운용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 기업 ESG 평가지표* 마련('15.11월)·보완, 기업 평가(800여개 기업, 6등급 평가) 등 실시(매년 연 2회 기업평가)
 - * 산업별 특성과 기업 재무성과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ESG 관련 52개 세부 평가지표 선정
 - 운용역이 기업 ESG 평가결과(800여개 기업, 6개 등급)를 국내주식 투자결정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 시스템' 구축·보완('16.12월~)
- (국내주식 : 직접운용) 액티브 투자의 경우, 신규종목 편입 및 투자종목 점검시 ESG를 고려 중('17.10월~)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시 책임투자 고려방식>

- (신규종목편입 검토시) 운용역은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종목 편입시 기업 ESG 평가결과 확인, 하위등급(C, D)일 경우 ESG보고서 첨부
- (투자종목 점검시) 운용역은 ^투자종목점검시 기업 ESG 등급이 하위(C, D)임에도 BM비중보다 높게 투자한 경우 검토의견 작성

- (국내주식 : 위탁운용)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수익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책임투자 펀드* 위탁 운용 중('18년말 약4.6조원)
 - * 위탁운용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ESG이슈를 종합 고려(술, 도박, 담배 관련 기업 투자배제 등) 하여 투자하는 펀드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18.7월)으로 국내상장주식 전체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활동 이행 중

□ 책임투자과 수익률 문제

-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경우 수익성에 문제 발생 우려 의견

* 책임투자-수익률 간 ▲양(+)의 상관성, ▲음(-)의 상관성,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연구결과 흔재

- 그러나 책임투자 유형에 따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 수립이 중요

* (예) ▲‘투자배제’는 신중한 접근 필요, ▲‘주주활동’은 비교적 일관되게 기업가치 향상시킴 등

□ 책임투자 활성화 전략 부재

- 다양한 책임투자 유형*이 있으나 기금은 종합적인 책임투자 전략없이 일부 유형만 소극적 활용

* ① 네거티브 스크리닝, ② 포지티브 스크리닝, ③ 규범기반 스크리닝, ④ ESG 통합투자, ⑤ 지속가능 테마투자, ⑥ 임팩트 투자, ⑦ 주주활동(기업관여)

- 국내주식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을 통해 ‘스크리닝’, 기업가치 훼손시 비공개 대화 등 ‘주주활동’,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에 한하여 ‘ESG 통합전략’ 사용 등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수준

* 술, 담배, 도박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네거티브 스크리닝)하고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BM을 구성(포지티브 스크리닝)

- 기금운용 전반에 책임투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책임투자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반 미흡

- 해외 주요 연기금과 달리, 책임투자 관련 정책·지침이 없으며, 기금본부 내 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 부재

- 이에 따라 체계적인 책임투자가 어려우며, 실제 투자활동과 연계도 미흡*

* (예) ▲책임투자팀 개발 ESG 평가기준은 국내주식 일부에 활용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사 선정·평가기준 마련시 책임투자팀 역할 없음(주식 위탁운용팀 담당) 등

- 또한, 신뢰성 높은 기업 ESG 정보가 중요하나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기업 공시 의무 등 관련 인프라 미비

Ⅲ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1

논의 필요 사안

- ◇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 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참고사항과 함께 이슈별 정리
 - 논의된 내용은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에 명시

1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 개요

- 국내주식 직접·위탁에 일부 한정하여 고려 중인 책임투자 자산군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
 - * ^국내주식 직접(액티브) 운용시 ESG 기업 평가결과를 고려 중(운용역 재량)
 - * ^국내주식 위탁 유형 중 책임투자 위탁펀드 존재

□ 검토 내용(안)

- (1안) 기금본부 조직·인력,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국내 주식(직접 + 위탁),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 順으로 확대 (대체투자는 제외*)
 - *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 투자 등)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책임투자 근거가 없으며, ▲공동투자자와 펀드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기준 등을 요구시 투자자 유치 등에 제약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포함시키지 않음
- (2안)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시 확대
- (3안) 기타 방안 (위원님 제언)

2

책임투자 전략

□ 개요

- 다양한 책임투자 유형·전략이 존재하나 국민연금은 스크리닝과 소극적인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까지),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에 한하여 ESG 통합 투자 등 위주로 활용 중
- 네거티브 스크리닝 등에 대한 적용원칙 및 기준 등 대해 검토 필요
 - 투자대상을 축소하여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적용 필요성 검토

< 참고 : 책임투자 7가지 유형 >

| 유형 | 주요 내용 |
|---------------|---|
| 네거티브 스크리닝 | ○ 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업을 포트폴리오 등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 |
| 포지티브 스크리닝 | ○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 등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방식 |
| 규범기반 스크리닝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입각하여 충족 여부를 투자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
| ESG 통합투자 | ○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시키는 방식 |
| 지속가능성 테마투자 | ○ 지속가능성 관련 테마(청정에너지, 녹색기술, 지속가능 농업 등의 자산,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
| 임팩트 / 지역사회 투자 | ○ 재무적 수익 뿐 아니라,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임팩트 투자), 혹은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특화된 투자(지역사회투자) 방식 |
| 주주활동 (기업관여) | ○ ESG에 맞는 기업경영을 위해 주주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하는 방식 |

□ 검토 내용(안) :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 제한)의 적용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국민연금법 및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 ①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또는 행위가 ESG측면에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②주주활동 등을 통해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자 제한 실시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이하생략)

<기금운용지침>

제3조(기금운용 목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법 제102조제2항)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해외 연기금 사례>

◆ 해외 연기금은 책임투자 및 투자제한의 목적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여에 있음을 기금운용지침 등에 명시

① 노르웨이(NBIM)

- 바람직한 장기투자수익(A Good Long-term Return)은 적법하고 효율적인 시장 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책임투자를 기금운용에 적용
- 수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에 대한 기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제한을 실시함을 명시

② 스웨덴(AP)

- (투자제한 지침)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운용수익 및 리스크 관련 목표와 타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 (적용 방식) 투자 제한시 해당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배제하는 투자배제(Exclusion) 방식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비중제한(Divestment) 방식 도입 검토 가능
 - (1안 : 투자배제) 투자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전면 회수하고 향후 신규투자를 제한 (BM반영 필요)
 - * (예) 무차별 살상 또는 대규모 인명피해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된 기업
 - (2안 : 비중제한) 비중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비중이 최대 BM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 * (예)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통해 중대성·개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3안) (1안)과 (2안) 모두 적용
 - (4안) 기타 방안 (위원님 제언) * 투자제한 원칙, 적용방식에 대한 제언
- (적용 범위) 자산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제한 대상 자산군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1안) 국내·외 주식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2안)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적용하는 방안
- (투자 제한 기준) 투자배제 및 비중제한 등 투자제한 대상기업 선정과 해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기준 및 단계적 이행방안 별도 마련 필요
 - 해외 연기금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기준 마련, 수탁자책임 전문위 검토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 * 해외 연기금 사례 : ①제품 또는 행위, ②무차별 살상, 대규모 인명피해, 인권침해, 중대한 환경훼손, 부패 등 여부, ③국제적인 원칙(UNGC, ILO, 인권선언 등)을 참고하여 투자제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붙임 5)
- (적용 절차) 투자제한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 선정,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본부가 실시

□ 개요

- '06년부터 책임투자 위탁펀드(국내주식)를 운용 중이나, '18년말 기준 4.6조원(전체주식 위탁자산의 9.1%, 전체주식의 5.0%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

- 위탁펀드는 수익성 등 반기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자금을 추가배분·조정하는데 책임투자 펀드는 성과가 뛰어나지 않아 규모가 크지 않음

* 수익률, 매니저 운용역량, 투자프로세스 우수성, 운용안정성 등 평가

- 한편, 연구(국민연금 책임투자과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한 연구 I, '18.3월)에서는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책임투자 규모를 확대 필요성을 제기

- 이의 일환으로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를 확대 제안

□ 검토 내용(안)

- (1안) 장기 목표 설정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정하지 않음

-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므로,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를 의무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 필요

- 또한, 8개 위탁펀드 유형 중 수익과 무관하게 특정펀드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수익성·안정성을 저해하고 위탁투자팀 성과평가에도 문제발생 우려

- (2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대로, 책임투자 펀드가 중장기적으로 수익의 변동성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 목표 책임투자 규모 설정 및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

- 다만, 최초 설정 이후 책임투자 BM의 수익률이 전체 위탁운용 BM의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책임투자 펀드 규모를 확대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 필요

- (3안) 기타 방안 (위원님 제언)

4 벤치마크(Benchmark, BM) 변경 및 공개

□ 개요

- 국내주식 BM*는 KOSPI로 외부 공개된 상태이고, 세부 위탁유형인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별도 BM을 부여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미공개

* 펀드 등의 투자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로 자산군별 운용방향 제시, 성과평가 가이드 역할

-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 책임투자 위탁펀드의 BM 조정, 책임투자 위탁펀드 BM을 공개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검토 내용(안)

① 국내주식 책임투자 위탁펀드의 BM 변경 검토

- (1안) ESG 요소를 반영한 신규 지수 개발·적용하여 BM변경
- (2안) 위탁운용사가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 위탁운용팀 BM과 동일하게 변경
- (3안) 기타 방안 (위원님 제언)

② 책임투자 위탁펀드 벤치마크 공개

- (1안) BM 공개시 다른 시장경제주체의 선매입 등으로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 종목의 BM 포함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 불필요
- (2안) 책임투자 벤치마크 산정방법론, 포함 종목 등을 공개시 다른 연기금 및 공모펀드가 활용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책임투자 활성화 유도가 가능하므로 공개 필요
- (3안) 1안, 2안 외에 기타 방안 (위원님 제언)

2

주요 추진사항

1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 등 지침 제·개정

- 현행 기금운용관련 규정 위상·체계에 맞추어 신규 원칙 제정 및 지침 등 제·개정
 - 기금운용관련 주요 규정 위상·체계는 ‘국민연금법’ - ‘기금운용지침’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등으로 구성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과 동일한 위상인 ‘책임투자 원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세부내용은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여 개정
 - 책임투자 원칙 및 지침 주요내용
 - ‘책임투자 기본원칙·목적,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 및 전략 ‘책임투자 이행체계(담당 조직, 시스템), ‘책임투자 관련 정보공시 내용 등 규정
- ※ 수탁자책임 전문위(책임투자분과) 논의사항도 반영하여 조문화 예정

- ◇ **(책임투자 기본원칙·목적)** 국민연금법의 취지와 목적에 일치하도록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ESG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 및 전략)** 책임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초기에는 일부주식에 한정하여 책임투자 실시, 추후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ESG 통합, 기업관여, 투자배제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
- ◇ **(책임투자 담당 조직 등)** 수탁자책임실에서 기금본부 책임투자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주요 정책사항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책임투자분과) 검토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
- ◇ **(책임투자 정보공시)** 기금의 책임투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투자 관련 지침, 활동내역 등을 공시

<참고 사항>

□ 해외 연기금 책임투자 원칙 사례

① APG(네덜란드)

- PRI 책임투자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8대 책임투자 원칙(Eight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마련
- * ESG 요인고려,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Engagement, 투자배제(기업, 국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제당국과 대화, 지속가능투자, 다른 투자자들과의 협력 등

② NBIM(노르웨이)

- 「Management Mandate」 내 별도 챕터로 책임투자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ESG고려 및 주주권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여 명시

③ GPIF(일본)

- 「수탁자 책임 원칙(Stewardship Principles)」 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GPIF의 기대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
- * 지배구조, 이해상충관리, 기업과의 대화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정책, 투자 과정에 ESG고려, 의결권 행사

□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6대 원칙

1. 우리는 투자분석(Investment Analysis)과 의사결정 과정(Decision-Making Process)에서 ESG를 고려(ESG Incorporation) 할 것이다.
2. 우리는 적극적인 주주권 (Active Ownership)을 행사하며 우리의 주주권 정책과 실제 이행에(Ownership Policy & Practice) ESG 이슈를 고려한다.
3. 우리는 투자대상(Entities in which we invest)에게 적절한 ESG 공시를 요구할 것이다.
4. 투자업계가 책임투자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촉진한다.
5. 우리는 책임투자 원칙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6. 우리는 책임투자 원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과 발전을 보고할 것이다.

2

책임투자 담당 조직 역량 강화

- 수탁자책임실(기금 책임투자 담당)의 조직·인력 확충* 및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총괄·기획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 부여

*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계하여, 조직·인력 확충

(`18년) 1팀(책임투자팀) 9명 → (`19년) 1실(수탁자책임실) 2팀(책임투자팀, 주주권행사팀) 16명 → 30명

- 운용부서가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등에 대해 기금본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책임투자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부여

| 책임투자팀 현재 업무 분장 | 추가 업무 내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투자(ESG) 전략 수립 및 리서치 ○ 책임투자 실행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의결권행사 지침 수립 지원 등 의결권 관련 제반사항 ○ 국내외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 총괄 ○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등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공시 |

- 해외 기업·투자자간의 책임투자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에 따라, 국제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하여 해외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 지분율·보유비중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리스크 노출도와 대응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기업과의 대화 진행

- 책임투자 관련 국제 협의체 등을 통하여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와 ESG이슈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교류 확대 추진
- 해외사무소 책임투자 관련 인력 확충을 통해 해외 투자대상 관련 책임투자 이행 및 네트워크 확대 등 전문성 제고

□ 책임투자 협업체계 구축

- 운용역이 ESG 리스크 수준을 적절히 인식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투자팀 - 운용역간의 정기적 회의 개최, 운용역의 참여 유도를 위한 MBO등 성과평가에 반영을 검토

* 캐나다 CPPIB는 ESG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투자에 반영하기 위해 책임투자팀 (Responsible Investment Team)은 정기적으로 내부 펀드매니저와 회의를 개최함

-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 등 보완장치* 마련 (준법지원실 등)

* (예) *해당 종목은 매매금지종목으로 신속히 지정, *해당정보의 공시를 기업에 요청 등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책임투자 분과 운영 내실화

- 책임투자 관련 중요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자문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책임투자 분과)를 연 4회 이상 개최하여 책임투자 활성화 도모

3 | 기업 ESG 정보 공시 확대

□ 보다 신뢰성 높은 기업의 ESG 정보 획득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법정공시, *거래소 공시, *ESG 공시 인센티브 마련 등 기업의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 추진

* ESG 공시 확대 연구용역 추진 중(거래소),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간 기업 수 : 71개사('17년, 자율공시) → 96개사('18년, 자율공시) → 211개사('19.6월, 의무공시) → '21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검토 예정(금융위, 거래소)

□ ESG 고려 활성화 유도

- 기업분석보고서(증권사) 제공 및 운용보고서(운용사) 작성시 재무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여 책임투자 활성화 도모

- 기금운용본부의 거래기관 평가에 보고서에 비재무적 요인 포함여부 평가하여 자본시장 참여자가 ESG 요인을 고려·공개하도록 유도

4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내실화

- 국내·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지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국내·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책임투자 전략, ESG고려 프로세스 및 이행수준,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
 - 위탁유형에 관계없이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유도, 평가항목은 수준별로 세분화하고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 (예) (1년차)책임투자 원칙 및 전략 수립 평가 → (2년차)1년차 평가내용 + ESG고려 프로세스 수립 여부 평가 → (3년차)2년차 평가 + 전담조직 및 ESG이행수준 평가
- 해외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원칙, 조직 및 정책 마련 여부, 책임투자 전략의 수립여부 및 이행내역, 주주권 행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외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사례(APG)>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 (평가항목) ①책임투자원칙의 구체성, ②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정도, ③책임투자 조직의 체계성, ④투자이사결정 내 책임투자 고려수준, ⑤ESG리스크를 고려한 실제 투자사례, ⑥기업과의 대화 시 ESG고려수준, ⑦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여부
 - (평가방식) 상기 7개 항목을 Level1~Level5로 구분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활용
- 평가수행
 - APG는 실사를 통해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이행정도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
 - 책임투자 관련 연례 설문조사 실시

- 국내·외 위탁운용사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 강화
 - 위탁운용사가 책임투자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 점검 및 지속 모니터링
 - * 위탁운용사 책임투자 정책 등 지침유무, ESG평가 및 활용 체계, ESG 고려 및 책임투자 관련 활동 사례 등 점검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추후 위탁운용사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정기 자금 배분시 수익률과 함께 평가기준으로 활용

□ ESG 평가지표 결정

- ESG 지표와 재무적 성과(수익률)와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기금 본부가 결정
 - ESG 평가지표는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주주권행사 기준 등으로 직접 활용되므로 기금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자 책임 전문위(책임투자분과) 논의
 - 기금운용본부에서 정한 ESG 평가지표의 개선, 변경사항은 매년 기금 운용위원회에 보고

□ ESG 평가지표 개선

- 기업의 ESG 관련 위험수준을 반영*하거나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 검토
 - * (예) 위법, 부당행위 등을 저지른 이사가 계속 재임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지표로 추가 반영

□ ESG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기업과의 대화 등 추진

- ESG 관련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사전적)
 - (목적)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투자대상기업 중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ESG 이슈**(Focus Issue)에 대해 ESG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 추구
 - * (예)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 중 ESG 개선이 필요한 기업
 - ** 기금의 ESG 평가지표 및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 마련
 - (추진사항) 비공개대화,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既수립된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절차 및 방법을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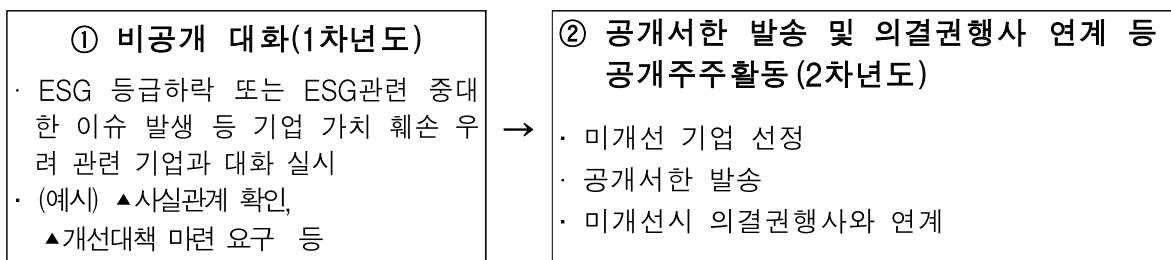
○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사후적)

- (목적)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시 사실관계 확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 촉구 등을 통한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추진사항) 정기 ESG 평가등급이 전보다 2단계 이상 하락하여 C, D 등급에 해당하거나 ESG 관련 이슈 발생시
- 기금운용본부가 사안의 심각성, 재발가능성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대성 평가) 한 경우,
-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근거하여 개선을 위한 주주활동을 수행
-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금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에 판단을 요청하여 최종 결정

* 주주활동 수행여부와 관련된 판단이므로 책임투자 분과가 아닌, 주주권행사 분과가 결정(*수탁자책임 원칙,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근거)

○ 주주활동 수행 결과 기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탁자 책임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라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추진

<참고 : ESG 관련 주주활동 프로세스>



※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의결로 즉각 공개 주주활동 가능
 -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도 가능

<참고 사항>

○ 해외 연기금의 ESG관련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사례

① CalPERS(미국)

- 장기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5가지 핵심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대화 수행
- * 이사회 수준(Quality) 및 다양성, ESG 관련 기업의 공시, 주주의 권리, 환경 및 사회 관련 위험 관리, 임원의 보수

② CPPIB(캐나다)

- '18년부터 5개 영역을 Focus Area로 선정하여 기업과의 대화 수행
- * 이사회 운영, 이사보수, 기후변화, 물위험, 인권

③ NBIM(노르웨이)

- 매년 중점관리이슈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NBIM의 기업에 대한 기대사항 (Expectation Documents)을 공개하며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 연계
- * 아동인권(2008), 기후변화(2009), 물관리(2010), 인권(2016), 세금 및 투명성(2017), 반부패(2018), 해양지속가능성(2018)

④ NYSCRF(미국)

- '17년 5대 중점항목(Priority issue areas)을 지정하여 기업과의 대화 및 주주제안 등을 실시
- * 기후변화, 정치자금 및 로비, 이사보수, 노동 및 인권, 이사회 다양성

IV

향후 추진계획

- 의견 수렴 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책임투자 분과), 실무평가위원회 논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19.9월)

□ **책임투자 개요**

- 투자자산의 선택·운용에 있어 수익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하는 투자 방식
- 투자의사결정시 ESG요소를 고려하는 것 뿐 아니라 주주권행사를 통해 기업의 ESG요소 개선 및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

<요소별 지표 예시>

- **환경(Environment)** : 기업의 탄소배출 및 에너지소비량 저감노력 등 고려
- **사회(Social)** : 기업의 고용규모, 사회활동, 공정거래(하도급) 등 고려
- **지배구조(Governance)** : 주주의견 수렴장치 보유여부,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배당 수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등 고려

□ **책임투자 7가지 유형**

| 유형 | 주요 내용 |
|---------------|---|
| 네거티브 스크리닝 | ○ 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업을 포트폴리오 등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 |
| 포지티브 스크리닝 | ○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 등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방식 |
| 규범기반 스크리닝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입각하여 충족 여부를 투자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
| ESG 통합투자 | ○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시키는 방식 |
| 지속가능성 테마투자 | ○ 지속가능성 관련 테마(청정에너지, 녹색기술, 지속가능 농업 등)의 자산,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
| 임팩트 / 지역사회 투자 | ○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임팩트 투자), 혹은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특화된 투자(지역사회투자) 방식 |
| 주주활동 (기업관여) | ○ ESG에 맞는 기업경영을 위해 주주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기업관여활동, 의결권행사, 주주제안 등)하는 방식 |

□ (법·제도) 책임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연금법에 책임투자 원칙* 규정(15.1월),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현황 공시 내용** (15.8월), 책임투자 원칙 반영(16.4월)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 ④ ...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 책임투자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 ▲ ESG 평가기준, ▲ 책임투자를 고려 자산군 범위(위탁·직접 구분) 및 운용규모, ▲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등

□ (위탁운용)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 '06년부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책임투자 펀드* 위탁 운용 중(18년말 4.6조원, 5개 운용사)

* 위탁운용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ESG이슈를 종합 고려(술, 도박, 담배 관련 기업 투자배제 등) 하여 투자하는 펀드

- 기금본부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위험의 큰 증가 없이 (안정성) 시장대비 초과수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운용 시작

- 책임투자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벤치마크 개발(15.10월) 및 보완(16.11월)

* (벤치마크) 펀드 등의 운용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로 펀드 운용방향 제시, 성과평가 가이드 역할

- 기존 KOSPI(ESG 요소 미반영)에서 ESG 요소를 반영한 벤치마크 개발·적용으로 책임투자 특성 강화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평가액 | 52,444 | 62,610 | 60,007 | 68,521 | 63,706 | 68,778 | 45,788 |
| 운용수익률 | 8.86 | 2.69 | △7.03 | 5.06 | 0.29 | 26.22 | △18.95 |
| BM대비 수익률 | △0.52 | +1.97 | △2.27 | +1.07 | △2.29 | △1.15 | △0.78 |

□ (직접운용) 책임투자 직접운용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보완

- 직접운용시 활용을 위한 ESG 관련 평가지표* 마련('15.11월)·보완, 기업 평가(800여개 기업, 6등급 평가) 등 실시(매년 연 2회 기업평가)

- 산업별 특성과 기업 재무성과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ESG 관련 52개 세부 평가지표* 선정

* (세부평가지표) ▲(환경) 탄소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12개

▲(사회) 급여수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여부 등 21개

▲(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분리여부 등 19개

** ESG 평가모형 및 지표는 지속 보완, 검증이 필요하여 평가지표별 배점, 세부기준, 기업 ESG 평가결과 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운용역이 ESG 평가정보(800여개 기업, 6개 등급)를 투자 의사 결정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ESG 시스템* 구축('16.12~)

* 운용역이 투자 결정시에 ESG 기업평가 결과(ESG 등급, 점수, 동종업계 분석 등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기업 ESG 평가정보 반영 여부 및 반영 방식은 담당 운용역의 전문적 판단에 재량을 부여

* 다만, 운용역은 ▲신규종목 편입시 기업 ESG가 하위등급일 경우 ESG보고서 첨부, ▲투자종목 점검시 기업 ESG가 하위등급임에도 BM비중보다 높게 투자한 경우 검토의견 작성 등 이행

- 기금운용본부는 ESG요인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임 투자형 BM을 통해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책임투자의 목적**

- NBIM(노르웨이): 1-3 the management objective, Management Mandate for GPFG
 - 은행(the Bank)은 적용가능한 운용체계/framework 안에서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 바람직한 장기투자수익(A Good long-term return)은 적법하고 효율적인 시장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책임투자 노력을 GPFG의 운용에 통합한다.
- AP(스웨덴): The mission of the AP Funds
 - AP 14 펀드의 목적은 낮은 리스크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 윤리위원회(The Council on Ethics)는 환경, 사회 이슈 등 경영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함으로써 AP 펀드들의 장기수익에 기여한다.
 - (투자제한 지침)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운용수익 및 리스크 관련 목표와 타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APG(네덜란드): Responsible Investment
 - APG는 다음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의사결정 전반에 ESG요인을 고려하여 책임투자 정책을 실행한다. ① 위험조정 수익(the risk-adjusted financial returns)에 기여 ② 사회적 책임 실현 ③ 자본시장의 충실성(integrity)에 기여

□ **네거티브 스크리닝 관련 해외 연기금 사례**

* 국민연금 책임투자 연구, 이명수 의원 발간자료 등 발췌

○ APG(네덜란드)

- 무기제조, 대인지뢰, 화학 및 생물무기 생산기업, UN Global Compact 등에 위배되는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 * 한국 풍산, 한화(무기제조), 미국 월마트(UN Global Compact 위반) 등 23개 기업 투자제한
-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국채는 투자제한
 - * 수단, 이란, 북한, 콩고 등 10개국

○ CalPERS(미국)

- 원칙적으로 **주주활동(Engagement)**을 거쳐 투자제한하는 것을 선호
- 수단, 이란지역 기업, 담배제조 기업 등에 투자제한

○ CPPIB(캐나다)

- 대인지뢰, 집속탄을 생산·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 NBIM(노르웨이) ^생산기반배제(Product-based exclusion), ^행동기반배제(Conduct-based exclusion)로 구분하여 접근

- (생산기반배제) 담배, 비인도적 민간살상무기, 발전용 석탄 채굴(매출액의 30% 이상)하거나, 발전에 활용하는 기업 투자제한

* 동 기준으로 105개 기업 투자제한 중('18년말 기준)

- (행동기반배제) ^중대한 인권침해 여부(아동노동, 강제노동, 자유박탈 등), ^전쟁이나 분쟁상황에서 개인권리 침해, ^중대한 환경 훼손 여부, ^중대한 기후변화(온실가스 배출), ^부패연루 여부, ^윤리적 규범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투자제한

* 동 기준으로 33개 기업 투자 제한 중('18년말 기준)

○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세계 인권 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서 유래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홈페이지 참조

| 구분 | | 주요 내용 |
|-----|-------|--|
| 인권 |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
| |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 |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 노동 |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 |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 |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 환경 |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 |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 |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 반부패 | 원칙 10 | 기업은 부당이익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